

의안
번호

291

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6. 04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291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05. 23.

라. 회부일자 : 2024. 05. 28.

2. 제안이유

-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-서울특별시 교육청-자치구의 '서울형 혁신교육지구' 사업이 종료되고, 서울특별시 교육청-자치구의 '서울미래교육지구' 사업 출범 및 '서울특별시-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' 시행 등 관련 기관별로 교육협력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정비하여, 특정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

어린이·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미래교육 체계 구축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- 나. 조례의 목적과 ‘미래교육’, ‘미래교육지구 사업’, ‘교육협력 지원사업’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다.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, 사업계획의 수립,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~ 제5조)
- 라. 미래교육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12조)
- 마. 미래교육 사업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4. 04. 18. ~ 2024. 05. 08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전부개정안은 2015년에 시작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22년 12월에 종료되고,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사업인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2023년 5월에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중 ‘혁신교육’을 ‘미래교육’으로 변경하였으며,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변경하고 ‘미래교육지구’ 등 사업 관련 용어를 재정의함.
- 안 제3조는 지역자원연계 교육과정 지원, 성북구 교육 특화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함.
- 안 제5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·단체를 대상으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미래교육의 정책 제언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한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 및 기업 등과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종료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의 명칭 및 운영협의회 구성 등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.
- 다만,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운영협의회 구성 대상자를 ‘어린이·청소년’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나,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수혜 대상이 ‘학생’이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 됨.

< 수정안 >

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운영협의회)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,(이하 생략)	제7조(운영협의회)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,(이하 생략)
3. <u>어린이·청소년</u> , 학부모 또는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	3. <u>학생</u> , 학부모 또는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